



##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권리 침해 이슈”

### 1.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조작기술인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인공지능 심층 학습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학습한 후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특정 인물의 얼굴 등 다른 이미지를 합성함으로써 조작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동일한 매커니즘의 음성합성 기술을 의미하는 ‘딥보이스(Deep Voice)’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딥보이스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은 기존의 이미지 합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미지 등 콘텐츠를 조작하여 합성하는 기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에 기반을 두어 콘텐츠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기존 합성 기술과 그 작업 과정이나 결과물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그 권리 침해 양태 또한 단순한 과거의 합성 기술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2. 첨단조작기술의 작업 과정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콘텐츠 조작 과정은 추출(Extraction) - 학습(Training) - 변환



(Conversion)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콘텐츠 조작을 위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딥페이크의 경우 각종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겠고, 딥보이스의 경우 노래나 음성이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추출이 완료되면 인공지능은 대상 콘텐츠와 조작 콘텐츠의 특징을 반영하여 재구축하는 학습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학습이 완료되면 원본 콘텐츠를 새로운 콘텐츠로 변환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학습은 딥러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방법론 중 한 가지로, 개발자가 입력하는 구조나 패턴에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에 숨겨진 관계와 규칙, 구조와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즉 개발자가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수행 과정을 스스로 익히며 결과물을 산출해내게 된다.

### 3.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권리 침해 이슈

#### 가. 저작권 이슈

인공지능의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 콘텐츠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갖춘다면 인공지능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 및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1) 데이터 수집 및 추출 과정

수집한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복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수정되는 경우 창작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인물의 눈, 코, 입에 해당하는 일부분만 복제한다면 해당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용된 부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인정되고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 2) 학습과정에서의 복제

인공지능은 위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추출한 후에는 이를 복제 및 재복제하는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복제물이나 파생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학습과정에서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저작권법은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면책하고 있는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는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로서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습 자체가 독자적이고 경제적인 이용행위에 해당된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즉 딥러닝 학습과정이 일종의 서비스로서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면책될 수 없다.

### 3) 딥러닝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

데이터 추출 및 학습과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갖고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하여 유사성을 갖춘 것으로서 의거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변경된 부분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사소한 개변에 불과한 경우라면 단순한 복제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 16 조의 복제권 침해가 된다. 또한 페이크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입 모양, 목소리, 억양 등까지 조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와 별개로 저작권법 제 22 조의 2 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될 것이다.

또한 침해된 저작물 중 인물 부분이 해당 저작물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3 조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특히 동일성을 훼손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와 독립적으로 저작권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을 조작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아직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때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카카오톡 대화 사용에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지 않은 채 학습에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 바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조작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한 사진과 영상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다. 딥페이크 성범죄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 페이크 포르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2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물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딥보이스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도 가능하다.

## 라. 그 밖의 권리침해 이슈



위와 같은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특정 또한 이슈가 된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 이를 이용하는 자가 침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런 명령이나 입력 없이 스스로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4. 결어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이 영상 기술에 이용되어 영화 산업이나 교육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기타 범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진화 속도에 맞는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이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자들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 관련 전문가



### 권단 파트너 변호사

02-6952-2616

dan.kwon@dkl.partners



### 이예희 소속 변호사

02-6952-2652

yehee.lee@dkl.partners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



DKL PARTNERS

(06241)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1701호, 1706호(역삼동, 미왕빌딩)  
T. 02-6952-2615 | F. 02-6918-0832 | <https://www.dkl.partners>